

인공지능전공 운영내부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운영내부규정은(이하 '본 내규'로 칭함)은 인공지능전공(Artificial Intelligence Major)(이하 '본 전공'으로 칭함)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전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졸 업

제2조(졸업학점) 졸업학점은 학칙 제26조(졸업학점) 및 학칙시행세칙 제11장 졸업에 따르며, 본 내규가 정하는 다음의 최소 요건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.

① 전공과목 최소 이수요건 (2025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적용)

구분	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	비고
제1전공 + 제2전공	제1전공, 제2전공, 각 전공별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 취득 (제1전공과 제2전공의 동일한 교과목을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 으며, 학점취득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)	인공지능전공 교과과정표 명시된 「전공필수 및 전공선택」 교과목만 인정됨. (교양필수 및 기초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)
심화전공	제1전공, 제2전공 중 선택한 심화전공에서 추가 12학점(총 48학점) 이수 / 고학년 과목(3, 4학년 과목)은 6학점 중복인정	

② 전공과목 최소 이수요건 (2019학년도 신입학생부터 2024학년도 신입학생까지 적용) :
심화전공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진입할 수 있다. 부전공·복수전공 또는 연계·융합전공을
신청할 경우 심화전공은 당연 포기되며, 부전공·복수전공 또는 연계·융합전공을 중도포기할
경우 심화전공으로 당연 재진입한다.

구분	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	비고
기본전공 + 다전공	주전공 45학점 + 다전공(복수전공, 부전공, 연계·융합전공) 이수	인공지능전공 교과과정표 명시된 「전공필수 및 전공선택」 교과목만 인정됨.
심화전공	주전공 69학점	

제3조(졸업인증) 대학의 졸업인증제는 학칙 시행세칙 제34조의 3 (졸업인증제)에 따른다.

제 3 장 교과과정

제4조(교과과정의 편성 및 심의) 교과과정 편성은 학칙 제18조(교과편성)에 따른다.

① 교과과정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가 교과과정 개편안을
전공교수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다.

제 4 장 장학금

제5조(장학금의 지급) ① 장학금의 지급은 학칙 제61조(장학금의 지급)에 따르며, 다음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한다.

1.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
 2. 직전학기 인공지능전공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
- ② ①항 이외의 장학관계 사항은 전공주임교수의 결정에 따른다.

제6조(동점자 처리규정) 제7조 제1항을 만족하는 자로서 두 명 이상의 성적이 동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한다.

- ① 전공 평점이 높은 자
- ②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많은 자
- ③ 총 이수학점이 많은 자
- ④ 전체 누적 평점이 높은 자

제 5 장 재입학

제7조(재입학) 재입학은 학칙 제11조(재입학)에 근거하여 다음 방식으로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.

- ① 본 전공에서는 재입학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며, 필요 시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② 면접심사는 전공주임교수 1인을 포함한 전공 교수 2인 이상이 실시하며, 전공 수학능력의 평가를 위해 구두평가로 실시한다.
- ③ 서류 및 면접 심사 결과에 따라 재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.

제 6 장 전공교수회의

제8조(구성과 소집) ① 본 전공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전공의 전임 교수전원으로 전공교수회의를 구성하며, 전공 전임교원은 연구년 및 사전 출장허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공교수회의에 참석해야 한다.

② 전공교수회의는 전공주임교수 또는 전공 전임교원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공주임교수가 이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제9조(심의사항) 전공교수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
2. 전공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신입교원 초빙분야 결정 및 전공 추천에 대한 인준
4. 전공의 공간 활용 결정 및 변경
5. 교과과정 수립 및 개편
6. 특별 목적의 전공위원회 설치 및 운영
7. 기타 전공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의결 정족수) 전공교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